

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

2022. 12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3
III. 발전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	7
1. 신산업 핵심규제 정비를 위해 혁신성과 확산형으로 제도 혁신 ...	8
2. 승인기업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밀착 지원	14
3.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성 제고	17
4.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편 ...	19
IV. 향후 추진일정	22

I. 추진배경

□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개혁 수단

- 시장실패 교정이라는 규제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, 혁신 기술 보유기업에 융합 신제품·서비스 출시 활로 제공
-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출범('19.1월) 이후 총 253건의 융합 신사업 규제특례를 승인하고, 제도 보완·개선 지속 추진

<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주요 추진경과 >

-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및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('19.1)
- 민간접수기구 신설 등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('20.1)
-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, 임시허가 전환근거 마련 등 산업융합촉진법 개정('21.9)
- 심의기한 신설, 재심의제도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수립(국조실, '22.7)

□ 새정부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에 개혁의 폭과 속도에서 일정한 한계 노정

- 개별 프로젝트 및 민원성 애로 해결 중심으로 운영되어, 과제의 혁신성이 낮고 특례범위가 좁아 전략적 규제개혁 추진에는 역부족
-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개시 및 스케일업 등에 대한 후속지원이 미미하여 사업화 성공률이 낮고 시장으로의 혁신 확산도 지체
- 관련 규제정비 지연으로 인해 상당수 특례승인사업이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·제한적 정책실험 수준에서 종료

□ 단순 특례승인 수단을 넘어 혁신 창출·확산을 위한 정책적 역할 강화 필요

- 규제특례 신청부터 승인까지 규제샌드박스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, 전략적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·해결
- 규제법령 정비,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전반으로 혁신 확산 유도

◇ **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제고 필요**
⇒ 「**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**」 마련 추진

□ 제도 도입취지

- AI,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·서비스*의 시장출시 가속화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(산업융합법, '19.1.17. 개정·시행)
- * 인증·허가기준 부재 및 기존 법령 적용 곤란에 따른 시장출시 지연 사례 발생

□ 주요 내용

- (규제개선) ①규제 신속확인,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, ③임시허가

구분	실증테스트 목적 (구역·기간·규모 등 제한)	시장출시 목적 (구역·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)
규제 모호	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○ 허가 필요여부,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○ 사업자 신청 → 산업부 장관 →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	
법령 공백 · 적용 부적합	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○ 안전성 등을 시험·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 (2년 이내, 1회 연장가능) ○ 사업자 → 산업부 장관 →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 결정	③ 임시허가 ○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(1회 연장,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) ○ 사업자 → 산업부 장관 →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 결정
금지·불허	관련법령 제·개정 필요	



- (위원회 심의)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허용여부 심의
 -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규제특례위 상정
- (기업지원)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,500만원(소요금액의 50% 한도내)을 지원하고, 실증특례사업에 한해 실증 추진 사업비 1.2억원 지원
- * '22년 사업예산 65.8억원 (실증사업비) 26.4억원 (책임보험료) 2.5억원 (컨설팅 등) 36.9억원

Ⅱ. 현황 및 문제점

1 운영 현황

◇ 제도 시행 4년차 → 혁신기술 ·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뒷받침

□ 제도 시행('19.1월) 이후 현재까지 총 253건의 융합신사업 규제특례 승인

○ 총 20회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(이하 “특례위”) 개최를 통해 실증특례 194건, 임시허가 42건, 적극해석 및 정책권고 17건 승인*

* 연도별 승인실적 : ('19) 39건 → ('20) 63건 → ('21) 96건 → ('22) 55건

○ 5개 부처, 6개 규제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특례를 승인*하여 융합 신제품 · 서비스의 시장출시 활성화에 기여

* 산업융합 253 > 혁신금융 232 > ICT 156 > 규제자유특구 80 > 스마트도시 39 > R&D특구 7

□ 특례 신청접수 후 사업개시까지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

○ 신청접수에서 사업개시까지의 평균소요기간은 '22.11월 기준으로 '19년 대비 약 20% 이상 감소('19년 301.6일 → '22.11월 220.3일)

- 특히, 기업의 사업개시 지원 강화로 특례승인 이후 사업개시까지 평균소요기간을 대폭 단축('19년 245.2일 → '22.11월 86.8일)

○ 반면,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난항, 규제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특례 신청접수 후 승인까지의 기간은 오히려 증가추세

< 규제특례 접수 이후 사업개시까지의 평균소요기간('22.11월 기준) >

구분	접수 → 사업개시	접수 → 승인	승인 → 사업개시
2019년	301.6일	56.4일	245.2일
2020년	262.0일	73.3일	188.7일
2021년	266.3일	106일	154.8일
2022.1~10월	220.3일	141.9일	86.8일

□ 법령정비를 통해 융합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완결적 규제 해소 도모

○ 식품위생법(공유주방), 주세법(수제맥주), 국토계획법(도심 수소충전소) 등 33건*의 법령정비 완료를 통해 융합신사업의 합법적 사업화 근거 마련

* 51개 승인과제와 관련된 법률 7건, 시행령 7건, 행정규칙 19건 법령정비 완료

2 제도 운영의 경제적 효과

◇ 규제로 막혀있던 사업기회가 열리면서 새로운 매출·투자·고용 창출

- 173개사의 사업개시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 창출
 - '19.1월~'22.11월까지 누적 매출액 1,631억원, 투자유치 3,626억원, 자체투자 4,929억원 등 직접적 경제성과 실현

< 매출·투자유치·자체투자 기준 상위 5개 승인과제 >

구분	기업명	과제명	금액(억원)
매출	A사	• 정수·냉수·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	480.6
	B사, C사	•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	227.2
	D사	• 킥고잉(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)	156.2
	E사	• 융복합 건강기능식품	101.9
	F사	• 공유미용실 서비스	52.6
투자유치	G사, H사	• 액화수소 생산·운송 및 충전소 구축·운영	1,281.0
	I사	• 액화수소 생산·운송 및 충전소 구축·운영	950.0
	J사	•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	159.0
	K사	•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	127.0
	L사	•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	104.7
자체투자	M사, N사	• 액화수소 생산·운송 및 충전소 구축·운영	2,928.0
	O사, P사	• 액화수소 생산·운송 및 충전소 구축·운영	553.3
	Q사, R사	•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·화학 공정 원료화	285.6
	T사	•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	160.0
	U사	•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	79.0

-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 적용으로 신규 고용 창출 및 사회적 비용 절감
 - 기존 규제 틀 내에서 허용되지 않던 공유미용실, 맞춤형 건기식, 자율주행 셔틀운행서비스 등을 통해 총 866명의 신규고용 창출
 - ❶대기오염 감소 및 자원소비 절약, ❷안전사고 예방, ❸이용자 편의 증진, ❹의료복지 증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

< 사회적 비용 절감 주요 사례 >

- (대기오염 감소)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차 보급 확대 → 9,390톤 CO₂ 저감 기대
- (안전사고 감소) 드론 도시가스 배관 점검 → 점검시간 50% 단축 및 안전사고 감소 기대
- (의료복지 증진)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→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, 현지의료 불안감 해소

◇ 제도적 미비, 맞춤형 지원 부족 등이 전면적 성과 확산과 규제개혁에 걸림돌

신청·접수단계 ↓	기술적·경제적 혁신성 낮은 단순 애로과제 위주로 신청·승인
특례심의 단계 ↓	- 이해갈등 등 장기지연과제로 인해 전체 심사일정이 지연 - 규제개선을 위한 갈등해결 메커니즘 미비 - 불법행위·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 및 면책·처리 규정 불명확
실증사업 단계 ↓	- 실증사업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한 승인기업 맞춤형 지원 부족 - 승인사업에 대한 과도한 부가조건이 사업이행의 걸림돌로 작용 - 실증사업비·책임보험료 지원시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음
규제정비 단계	- 규제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규제정비에 나설 유인이 부족 - 규제정비 착수의무만 있을 뿐, 정비 완료를 위한 각종 규정은 미비

□ (특례대상) 기술적·경제적 혁신성 낮은 단순 애로과제 다수 분포

- 기존 실증특례·임시허가 과제(212개)를 혁신성*에 따라 분류할 경우, 약 50%가 혁신성이 낮은 단순 시장출시 애로 과제 ('22.8월 기준)

* 기술사업모델의 ①신규성, ②진보성, ③난이도(모방용이성), ④사회경제적 파급력 등 종합 고려

< 기술·사업모델의 혁신성에 따른 과제 유형 분포 >

혁신성	상위그룹	중위그룹	하위그룹
과제명	디지털발전소, 수전해 수소, 감시로봇 등	비대면진료, 도심수소 충전소, ESS 재활용 등	건기식 소분판매, 차량 옥외광고, 공유미용실 등
과제수	52개(21.8%)	74개(31.0%)	113개(47.3%)

- 기업의 과제단위 신청에 기반을 둔 Bottom-up 관리, 특례승인 건수 위주 과제관리 등으로 인해 단순 규제유예를 노린 과제가 주로 신청

□ (심사기간) 이해갈등 등 장기지연과제로 인해 전체 심사기간 증가

- 신청접수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기간은 평균 99.5일*이며, 181일 이상 장기지연과제가 심사기간의 전반적 증가를 야기**

* 국조실 심사기간 가이드라인은 신청접수 이후 승인까지 90일 이내 처리 규정

** 181일 이상 장기지연과제 제외시, 평균심사기간은 98.2일에서 78.3일로 감소

< 특례승인 과제의 심사기간 분포 >

심사기간	90일 이하	91~120일	121~180일	181일 이상
과제수	140개(58.6%)	34개(14.2%)	39개(16.3%)	26개(10.9%)

○ 장기지연과제는 주로 비대면의료, 공유경제 등 안전성·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 주로 포진

- 산업융합촉진법상 갈등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* 가운데,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(국조실)와의 협력·연계도 이제 시작단계

* 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는 있으나,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·권한은 부재

< 181일 이상 장기지연과제 현황 >

구분	건수	평균기간	주요 과제
비대면진료	9	267일	• 재외국민 비대면진료, 성병원인균 확인 등
생활서비스	8	290일	• 공유경제, 무인서비스, 온디맨드, 광고 등
생산·공정기술	3	388일	• 신공법(맞춤형 화장품), 신소재(돔텐트)
수소경제	2	211일	• 수소 저장·운송 용기 및 설비
에너지산업	4	264일	• 이동 및 고속 충전, 혼유 방지 등
합계	26	283일	

○ 사고시 책임소재와 면책규정 불명확으로 전향적 규제개선 유도에 한계

□ (실증사업) 사업화 지원 부족, 과도한 실증조건 등이 또다른 제약으로 작용

○ 최근 실증사업 및 이후 사업화 단계에 대한 기업 지원수요가 증가

- 금융, 마케팅, 특허·인증 획득,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수요*에도 불구하고, 그간 지원사항은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에 한정

*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지원 수요조사 결과(KIAT, '21.6, 복수응답, %) : (금융) 73.6, (홍보·마케팅) 69.8, (특허·인증 획득) 각각 62.3, (기술지원) 60.4

○ 승인시 부가된 추가조건* 이행과정에서 사업개시 지연 및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하고 있어, 과도한 조건이 사업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

* 전체 승인과제 중 조건이 부가된 과제의 비중이 94.9%에 달함

□ (법령정비) 규제정비 유인 및 의무규정 부재로 법령정비 완료가 미진

○ 규제정비 착수의무만 규정, 규제정비 완결 유도를 위한 제도적 수단 부족

○ 규제정비내용 사전협의,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절차·규정도 미비

< 법령정비 추진단계별 규정 현황 >

구분	필요성 검토	정비 착수	완료 의무·기한	정비 절차·방법
실증특례	사업자 법령 정비 요청시	규제부처 필요 판단시	규정없음	규정없음
		규개위 개선권고시	지정기간내 완료	
임시허가	허가 직후	허가기간 내 착수 의무	규정없음	

Ⅲ. 발전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

목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**민간주도 혁신성장의 촉진과 확산**을 뒷받침
(Business Access를 넘어 Business Success까지 지원)

< 발전 방향 >

- ①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·개선을 위해 혁신성과 확산형으로 제도 혁신
- ② 승인기업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밀착 지원
- ③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성 제고
- ④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편

분야	세부 추진과제
1. 성과확산형 제도혁신	① 혁신산업 창출·확산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 신설 ② 규제샌드박스 혁신성 검토 강화 및 신속처리체계 구축 ③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한 규제혁신 거버넌스간 협력 추진
2. 사업화 지원	① 승인기업 시장성 확보를 위한 스케일업 R&D 지원 추진 ② 승인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화·투자 자금 확보 지원 ③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 밀착 지원
3. 신속한 법령정비	① 적극적 규제개선 유도 및 신속한 규제정비 시스템 구축 ② 소비자 보호 강화, 공정거래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③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신속 법령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
4. 운영체계 개편	① 맞춤형 특례기간 부여 및 이용자 중심 심의절차 개선 ② 전문성·대표성 제고를 위한 특례위·전문위 구성 개편 ③ 규제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을 통해 정보공개 강화 및 편의성 제고

◇ **현행 개별 프로젝트 위주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미래 신산업 규제의 선제적 발굴·개선을 통한 전략적 실증지원체제로 개편**

구분	기존 산업융합 샌드박스 (As-Is)	개편 이후 샌드박스 (To-Be)
복합·덩어리 규제	· 미래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덩어리 규제 → 별도 심의 및 기획을 위한 규정 및 프로세스 부재	· 3개 기획형 트랙 신설을 통해 규제의 선제적 포착 및 실증 추진 ①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규제 발굴·개선 및 실증지원 추진 ② 규제특례를 활용한 대학출연연 기술의 중소·중견기업 이전·사업화 촉진 ③ 민·군협력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를 군수 분야로 확산
개별기업 규제애로	· 개별기업 민원성 규제 해소 → 혁신성 없는 과제 다수 접수 · 기존 승인과제와 유사·동일한 과제도 사실상 동일한 절차 준수 · 갈등사안에 대한 별도 문제해결 및 관리 프로세스 부재 → 심의기간이 무기한 지연	· 과제혁신성 사전컨설팅 강화를 통해 과제의 혁신성 및 시장파급력 검토 ·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을 통해 유사·동일과제는 45일내 신속 심의 · 전문위/특례위를 통해 이해관계자 갈등의 우선적 조정 추진 → 미해결시 갈등해결 샌드박스 및 규개위 등 상위 조정절차로 이관

<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트랙 기획방향 >

구분	대상규제	발굴·기획 및 실증방향
① 미래전략 기획	미래산업 덩어리규제	▶ (목적) 미래산업 발전단계별 규제요소 포착 및 선제적 실증 ▶ (분야) 국내·외 미래예측 연구 및 협단체 수요를 종합하여 선정 ▶ (예시) 수소경제 R&D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실증사업
② 혁신기술 성과창출형	기술사업화 저해규제	▶ (목적) 규제 리스크 있는 대학·출연연 보유기술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 이전·사업화 유도 ▶ (내용) 규제특례, 기술 컨설팅 및 기술이전·사업화 자금 지원
③ 민군협력	군수분야 특수규제	▶ (목적) 민간혁신제품의 군실증을 통한 국방전력 강화 및 판로 확보 ▶ (분야) 국방업무 효율화 및 장병복지 향상 제품·서비스 ▶ (예시)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경계지역 순찰

◇ 혁신산업 창출·확산을 위한 3개 「기획형 규제샌드박스」 신설

① 미래 신산업 규제의 선제적 개선을 위한 「미래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」 추진

- (주요내용) 미래 시장·산업 트렌드를 선도할 혁신 산업·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·도출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·개선

- 산업기술 R&D 전략기획단(혁신전략 MD)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·신기술 도출* 및 관련규제 맵핑을 추진하고, 실증·규제정비·사업화 종합 지원

* (예) 수소산업, 우주·항공산업, 에너지신산업, 로봇·모빌리티, 스마트홈, 첨단의료 등

- (추진절차) ①미래 신산업 도출 → ②관련규제 맵핑 → ③실증 기획 → ④규제정비

- ① (미래 신산업·신기술 도출) 민관 라운드테이블*을 통해 미래 성장성 높고 선제적 규제개선의 효용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·기술 분야 선정

* 혁신전략 MD, 경제단체, 업종별 협·단체, 전문기관(STEPI, 에경연 등) 등으로 라운드 테이블 구성('23.3) → 미래 신산업 시나리오 분석, 산업별 예측조사 등 수행

- ② (관련규제 맵핑) ①기술 개발양상, ②시장 발전경로, ③국제표준 논의방향, ④국내 관련규제 현황 등 종합 검토 → 신산업·신기술 규제 맵 작성*

* 자율車, 드론, 로봇 등 기 수립된 '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로드맵'과 연계

→ 신산업·신기술의 분야별 및 발전단계별로 관련 규제를 매칭하고 규제개선 필요과제 및 정비가 필요한 공백영역 도출

- ③ (실증사업 기획) 도출된 규제개선 필요과제 및 규제정비 영역에 맞춰 규제 검증 및 정비를 실증하기 위한 실증사업 기획 및 사업자 공모

→ 기획단계부터 실증사업계획과 규제 정비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증사업 검증 및 법령·규제정비 추진

* 사업 기획은 KIAT를 중심으로 산기평·에기평·법제연 등 유관 전문기관 참여

- ④ (규제정비 및 사업화 지원) 특례위에서 사업자 선정평가결과(전문위 심의), 실증사업계획, 규제정비계획 등을 심의하고 규제특례 부여

→ ①실증사업 검증을 통한 규제·법령 정비 추진, ②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R&D, 기술자문, UX 디자인, 자금 등 지원 추진

- (추진일정) 미래 신산업 1~2개 분야에 대한 기술·시장예측 및 관련규제 맵핑 추진('23.상) → 사업자 공모 및 실증사업 추진('23.하)

② 대학·출연연-중소·중견기업 간 「혁신기술 성과창출형 규제샌드박스」 추진

- (주요내용) 대학·출연연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규제특례 부여 및 자금 지원 추진

- (추진절차) ①이전가능기술 도출 → ②실증사업 기획 → ③규제특례 승인 → ④사업화 지원 및 규제정비

- ① (이전가능기술 도출) KIAT, 대학 기술지주회사, 출연연 TLO, 특허전략개발원 등으로 「기술이전협의체*」를 구성하여 사업성 있는 이전가능기술 도출**

* (KIAT) 기술 이전 및 실증사업 기획 총괄, (대학 기술지주회사, 출연연 TLO) 이전가능 기술 도출 및 기술 이전 지원, (특허전략개발원) 대학·출연연 사업화 유망특허 분석 등

** 대학·공공기관 보유 미활용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는 「기술나눔사업」과 연계 추진

→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이전가능기술에 대한 **사업화 규제리스크 사전검토**를 추진하고, 사업화 단계에서 확인되는 규제도 검토하여 실증사업과 연계

- ② (실증사업 기획) 기술보유기관의 이전의사, 중소기업의 사업 수요, 규제검증·개선계획 등을 종합하여 실증사업 기획

* 실증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은 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고, 대학·출연연 TLO가 기획을 주도하여 이전기업(주관)-출연연(참여, 연구자) 형태로 실증사업 제안

** 실증사업 신청 전 법무법인 등을 활용하여 규제이슈를 분석·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

- ③ (규제특례 승인) 특례위에서 사업자 선정평가결과(전문위 심의), 실증사업계획, 규제정비계획 등을 심의하고 규제특례 부여

- ④ (사업화 지원) 실증사업 단계에서 **대학·출연연에 대한 기술이전 지원** 및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** 추진

< 대학·출연연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 방안(안) >

대학·출연연	→	• 특허 갭펀드 지원, 기술출자비용 적용 제외, 기술이전인력 인건비 보조 및 기술사업화 전용예산 지원 등 기술이전 지원
중소·중견기업	→	• 소유권 이전 및 라이선스 등 기술이전비용 지원(50% 이내, 1억원 한도), 스케일업 R&D, UX 디자인, 자금 등 지원

- ⑤ (규제정비) 실증사업 검증을 통해 여타 사업자도 해당 비즈니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**규제·법령 정비** 추진

- (추진일정) 대학·출연연 각 1개와 협력하여 혁신기술성과창출형 샌드박스를 시범 추진('23.상반기 중)하고, 하반기부터 참여 대학·출연연 확대 추진

③ 민간 혁신제품을 軍에 실증·적용하는 「민군협력형 규제샌드박스」 추진

- (주요 내용) 군수 소요가 있는 민간 혁신기술·제품에 대해 군부대 실증 (시범적용, 실증기획 등 2개 트랙) → 관련규제 정비 → 군수 조달로 연결

* 플라즈마 고온 열처리기술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(비츠로넥스텍)에 대해 軍 제1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수행중('21.12월~)

- (추진절차) ①시범적용 및 실증기획 → ②실증사업 확대 → ③판로 확보 지원

- ① (시범적용 및 실증기획) 군수소요가 있는 품목은 시범적용을 통해 공급 계약 추진, 군 수요기반 신규과제는 실증기획을 통해 사업 추진

시범적용사업 (Bottom-up)	• 기존에 승인된 제품·서비스 중 안전성이 입증되고 군수 소요가 있는 품목은 즉시 공급계약 추진 * (예) 수소전기트럭 : 친환경 운송수단을 병력·군수품 수송에 활용
실증기획사업 (Top-down)	• 군 수요기반 과제기획을 통해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혁신제품·기술을 발굴하여 실증특례 부여 * 추진절차(안) : ①수요발굴(육군 군참부) → ②국방·조달 분과위 심의(국방부 관련부서 포함) → ③전문위 검토(실증품목 선정) → ④실증과제 기획(KIAT, ADD 등) → ⑤사업자 공모 → ⑥특례위 심의의결

- ② (실증사업 확대) 軍 자원(부지·시설 등) 특수성*을 활용하여 기존 승인과제 실증규모 확대 → 기업 신청을 받아 부가조건 변경절차를 거쳐 실증 확대

* (예) 軍 부지 내의 도로는 '도로교통법'의 적용을 받지 않고, 일반통행자가 없어 실외 자율주행로봇 추가 실증에 적합

- ③ (판로 지원) 군 실증을 통해 기술성숙도 및 안전성·효과성 입증 기업에 대해 우대규정 및 가점 마련 추진 → 샌드박스를 통해 군납 가능성 제고

- (추진일정)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수요가 확인된 과제의 규제특례 실증 추진('23.1분기) → 군수수요에 맞춰 실증분야 확대

⇒ 3개 신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프로그램 도입·운영 등을 위해 「산업융합촉진법」 개정 추진('23)

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혁신성 확보 및 신속처리체계 구축

□ 신청과제의 혁신성 강화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사업 컨설팅 지원

- 신청·접수단계에서 민관 합동 샌드박스컨설팅지원단*을 구성·운영하여 신청과제의 심의대상 적합성 및 혁신성을 사전심의** 및 보완

* 샌드박스 주관부처(규제샌드박스팀장), 전담기관, 연구·전문기관, 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

** 절차: 지원기관(KIAT·대한상의) 대상과제 선별 → 기업 의견 청취 → 지원단 심의 → 컨설팅 및 보완요구

- 컨설팅 대상과제는 ①기술적·경제적 혁신성, ②사업의 신규성·참신성, ③시장 파급력, ④예상효과, ⑤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 반영*하여 선별

• 대상과제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

* 사전심의 세부지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게시·공개 예정('23.1Q)

□ 유사·동일과제에 대해서는 先승인→後보고로 신속처리 절차 개편

- 유사·동일과제에 대해 전문위 심의면제 및 특례위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전문위 승인 종결(특례위 사후보고) 형태로 개편

- ① (지원대상) 既승인과제와 내용·목적의 유사·동일성*이 인정되는 후속과제

* 유사·동일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(규제법령, 사업모델 등)은 산촉법 시행령에 규정 예정('23)

* 유사·동일성 인정시 심의과정에서 규제부처는 기존과제 이상의 과도한 부가조건 부가 금지

- ② (절차) [현행] 전문위 심의면제(특례위 승인必) → [개선] 전문위 종결(특례위 사후보고)

* (현행) 기업신청 → 주관기관 유사·동일성 판단 → 부처협의 → (전문위 생략) → 특례위 승인
(개선) 기업신청 → 전문위 유사·동일성 판단 → 부처협의(15일내) → 전문위 승인 → (특례위 사후보고)

- 전문위 승인 직후 임시확인서를 발급하여 즉시 실증사업 개시 허용
(정식확인서는 특례위 사후보고 후 발급)

□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과제 유형화 및 심의 절차·기간 차별화

① 신규·비쟁점 과제	☞	• 일반절차에 따라 90일 이내 전문위·특례위 심의
② 신속처리 안건	☞	•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45일 이내 신속 심의
③ 기획형 과제	☞	•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기간 유연화 → 운영요령에 별도규정
④ 쟁점·갈등과제	☞	• 심의기한 제한없이 이해관계 조정, 위원회 심의 후 결론 도출

◇ 원할한 갈등조정을 위한 규제혁신 거버넌스 간 긴밀한 협력 추진

□ **갈등과제**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**폭넓은 과제토론**을 거쳐 결론 도출

- **(갈등과제 분류)** 과제심의 절차 중 **갈등요소 포착** 시, 갈등과제로 분류하여 별도의 토론절차 개시(90일 내 심의기간의 예외사유로 규정)
- **(갈등양상 분석)** 해당과제와 관련된 관계부처, 이익집단, 전문가와 다수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갈등관계를 파악하여 갈등구도 분석
- **(갈등조정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)** 과제 갈등조정을 위한 **전문위원회***를 구성하여 과제의 可/不可 아닌 상생을 위한 **복수의 조정안***을 도출하여 1차 심의

* 기존 전문위원회에 산책법상 '갈등조정위원회'의 기능과 권한을 부가하여 운영

** (예) ①이익집단이 공동사업자 및 감독기관 등으로 사업 참여, ②실증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배분, ③지역별·시간대별 사업구획 등 다양한 방안 고려

□ **갈등 첨예 사안**은 **사회적 합의** 도출을 위해 **상위 규제혁신거버넌스**로 이관

- **(단순갈등과제)** 갈등구도가 단순하고 갈등이 비교적 약한 과제의 경우, 전문위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규제특례위에 상정·심의 → 특례 부여
- **(복합갈등과제)** 이해관계자가 다수 결부된 갈등정도가 심각한 사안은 규제특례위의 조정결과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

< 갈등과제 처리 프로세스(안) >

과제성격	갈등분석	과제토의	전문위 토의	안전 심의
일반과제	-	⇒ 부처 의견조회, 부가조건 협의	⇒ 안전성, 경제성, 혁신성 검증	⇒ 규제특례심의위
단순갈등과제	이해관계자 및 갈등관계 파악	⇒ 兩者토론을 거쳐 상생 조정안 마련	⇒ 조정안 심의	⇒ 규제특례심의위
복합갈등과제	이해관계자 및 갈등관계 파악	⇒ 多數토론을 거쳐 상생 조정안 마련	⇒ 조정안 심의, 공론조사	⇒ 규제특례심의위 ↓ 규제개혁위원회

◇ 샌드박스 승인기업 시장성 확보를 위한 스케일업 R&D 지원 추진

- 실증제품·서비스의 성능·품질·안전성 제고를 위한 **사업화 R&D 신설**(’24)
- **(생산성 향상 R&D)** 실증과정에서 확인된 시장 피드백을 반영하여, 실증제품·서비스의 **공정개선 및 성능·품질 스케일업 기술개발** 지원
 - * (예) 수소용기 용량·강도 50% 강화를 위한 융합신소재 개발, KIOSK UX 디자인 향상 등
 - **(안전성 제고 R&D)** 규제요구 수준 이상으로 실증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험예측, 안전 모니터링 등 **안전관리 기술개발** 지원
 - * (예) 디지털트윈 기반 주요시설 위험 예측모델, 고압가스설비 안전감시 센서·기기 등

<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R&D 지원방안 >

구분	① 생산성 향상 R&D	② 안전성 제고 R&D
목적	실증 이후 신사업 스케일업 → 시장경쟁력 제고	신사업 안전성 확보 → 규제 리스크 해소
대상	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	(주관) 연구기관 (참여) 승인기업, 대학 등
내용	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성능평가 및 인증	위험·안전관리 기술 개발, 시제품 제작 등
규모	• 과제당 국비 3~5억원(연간) / 2년 이내 • ’24년 5개 과제	• 과제당 국비 5~10억원(연간) / 2년 이내 • ’24년 2개 과제

◇ ’23년에는 기존 R&D 사업을 활용하여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R&D 시범추진

- (수요연계형 R&D) 정부조달 등 공공수요 기반 제품혁신 기술개발 및 우수 R&D 성과물 구매 지원 ⇒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‘우대조건’ 신설

①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R&D : 규제샌드박스 **우대조건** 신설(’23)

② 정부조달 수요연계 R&D* : 규제샌드박스 **우대조건** 신설(’23)

*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: 공공수요 기반 사업화 R&D ⇒ 정부조달 연계

- (디자인 R&D) 사용자 중심의 제품혁신·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⇒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‘전용과제’ 신설

-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: 규제샌드박스 **전용과제**(1개) 신설 → 승인기업(주관)

◇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화·투자 자금 확보 지원

□ 승인기업의 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**전용펀드 조성** 및 **투자유치** 지원

- **(펀드조성)** 로봇, 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 기업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'**융합 신산업 지원펀드(가칭)**' 신설* 추진('23.하)

* 5개 부처, 6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 **펀드약정 총액의 최소 30% 이상 투자**토록 규정

- '23.상반기에는 기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활용하여 승인기업 투자지원 추진

< 투자펀드 활용 자금지원 방안 >

'23.상	기존 자펀드 활용	'23.하	융합신산업 지원펀드 신설
지원펀드	① 산업 디지털전환 혁신펀드,	신설방안	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자펀드 신설
	②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,	투자방향	융합 신산업 분야 혁신 제품·서비스 창출 기업에 투자
	③ 탄소중립·에너지혁신 펀드 등 →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자펀드 활용	지원대상	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, 국가 전략기술, 초격차 기술기업 등
지원대상	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(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)	조성규모	민관 매칭 500억원 내외

- **(투자연계)** 승인기업의 제품·기술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투자(VC) 연계 목적의 **IR*** 개최(연 1회, '22.하반기) 및 「**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****」를 활용한 연계 지원방안 검토

* 승인기업의 VC 대상 투자유치 발표(IR), 승인기업-VC 사전매칭을 통한 1:1 투자 상담 등

** CVC와 협력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, 주력산업 고도화 등 동반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펀드

- 대기업(CVC)이 승인기업 인수 시 M&A 규정(지분구조, 기업결합심사 등) 완화 검토

□ 사업의 혁신성·난이도·투자규모 등을 고려한 **맞춤형 자금지원** 추진('23)

- **(실증사업비)** 기존 일률적인 사업비 지원(최대 1.2억원)을 사업특성, 혁신성,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한 **차등지원체계**(최대 3억원)로 개편

-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사·동일과제도 최초 승인과제 지원액의 50% 내 지원

< 실증사업비 지원규모 및 방식 변경 >

기존(~'22)		개선('23~)	
지원비율	실증사업비의 50%	지원조건	민간부담금 매칭(30~50%)
지원방식	한도 내 동일지급	지원방식	사업특성·난이도별 차등지급
지원금액	최대 1억 2천만원	지원금액	기본 1억원 + 추가 2억원(차등분) → 최대 3억원 지원

- **(책임보험료)** 승인기업이 실증사업 전 의무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**지원비율 상향 조정**('23)

* (기존) 책임보험료의 50%(최대 1,500만원) → (변경) 책임보험료의 **70%(최대 2,000만원)**

◇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 밀착 지원

□ 승인기업의 조기 사업개시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

- **(추진방향)** 정부 출연연, 시험·인증기관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승인기업과 매칭 → 실증 완성도 제고 및 사업화 전과정 전담 지원
- **(지원분야)** 전체 승인건수의 68.4%를 차지하는 **AI·빅데이터**(ETRI), **에너지**(에기연), **의료**(강북삼성병원), **시험·인증**(산업기술시험원 등) 분야 우선 추진('23)
 - *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(KIAT)과 강북삼성병원, 출연연 MOU 체결('22.12)
→ 해당 기관장을 **특레위 위원**, 관련 소장·센터장 등을 **전문위 위원으로 위촉**
- **(지원내용)** 실증사업 개시→실증→사업화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
 - ① **(부가조건 검증)** 특레심의과정에서 전문기관이 부가조건 타당성 검증 → 사업성 확보 및 조기 사업개시를 위해 **과도한 부가조건 방지**
 - ② **(시험·인증 지원)** 신제품·서비스의 성능·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증절차 등 전문기관* 1:1 전담 지원 및 시험·인증 비용** 보조
 - * 산업기술시험원,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참여
 - ** 규제특레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시험비용의 80% 지원(최대 1,000만원 한도)
 - ③ **(사업화 컨설팅)** 출연연 등 전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한 기술성숙도 제고, 공정개선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자문 제공

□ 공공조달·해외진출 등 국내외 수요처 발굴을 통한 판로 확보 지원

- **(정부조달)** 규제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*에 대한 현행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을 강화**하여 초기 공공수요 창출 지원
 - * '임시허가' 제품의 경우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었으므로 특레기간 중에도 우대규정 적용
 - ** (현행) 혁신성 평가절차 면제 → (개선) 혁신성 평가절차 면제 + **적합성평가조달심의시 가점부여**
- **(해외판로)** 해외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승인기업에 대한 시장조사, 파트너 발굴, 기술홍보 등 지원 추진(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연계)

□ 규제특레↔자치법규간 불일치에 따른 실증지원 방지를 위한 「조례 특레」 도입

- 지자체 자치법규가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「조례 대상 특레부여제도」 신설 추진('23)

· 규제 집행현장에 특레사항을 전달하고 사업개시 지원 병행 추진

◇ 적극적 규제개선 유도 및 신속한 규제정비 시스템 구축

□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시 법령정비가 담보되는 규제개선체계 구축

- (법령정비) 규제개선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 사업의 안전성 검증계획 및 법령정비계획의 수립기한 설정 (국조실 지침)

① (안전성 검증계획) 규제부처는 승인기업과 협의하여 안전성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승인기업에 통보 → 실증특례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

② (법령정비 계획) 규제부처는 안전성 검증 완료시 규제법령 정비계획*을 수립하여 승인기업에 통보 →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

* 법령개정 추진시 → 개정내용, 추진일정 / 개정 불가시 → 사유 명시(행정규제기본법 등 개정 ~'23년)

③ (법령정비 의무강화)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,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규제법령에 대한 정비의무를 [현행] '착수'에서 [변경] '완료'로 강화*

* 법령정비 완료의무는 임시허가부터 우선적용 후 실증특례까지 확대 검토

④ (법령정비 책임제 도입) 규제 소관부처의 담당 고위공무원(국장급)을 '법령정비책임자'로 지정하여 법령정비 이행 담보

⇒ 행정규제기본법(시행령) 개정에 맞춰 산업융합촉진법(시행령) 개정 추진('23)

- (민·관 소통채널) 체계적인 실증관리와 실증데이터 기반 합리적 법령정비를 촉진하는 민·관 합동 소통 TF* 운영

* 규제법령 소관 관계부처, 규제특례 승인기업, 관련 기술 및 법률 전문가 등

- 전문가 주도 실증계획 적정성 검토, 안전성 검증, 법령정비(안) 마련
→ 규제부처의 안전성 검증 및 법령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



□ 규제법률의 조기개정을 지원하는 「국회 상임위 우선심사」 도입 노력

- 규제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법 등에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 우선심사 규정* 도입 노력

* 국회법 제58조의2(위원회의 심사)를 개정하여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우선심사 회부 규정

□ **면책조항 도입** 등을 통해 규제부처의 **적극적 규제개선** 유도

- **(면책제도)** 특례 부여, 법령 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업무 관련 「**적극적 규제개선 면책조항***」 법제화 추진 (유사입법례: 소부장특별법 제52조)

*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**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**, 「**공공감사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른 **징계, 문책 등 책임 면제**(산촉법 개정 추진, '23)

- **(사전컨설팅)** 감사원 소관 '적극행정 사전컨설팅'을 정례화하여 특례심의 전 심의과제 및 제반업무에 대한 일괄 사전컨설팅 제공

* 산업부-감사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추진('23.上)

- **(성과보상)** 규제샌드박스 관련 적극행정 우수부처에 대한 국조실(업무평가*), 행안부(상훈) 등 정부 내 인센티브 강화

*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(산업부, 과기부 등)로부터 **규제샌드박스 우수부처(승인분야 및 법령정비분야 구분)**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**정부 업무평가(규제혁신부문)**에 반영

◇ **소비자 보호 강화, 공정거래 등 규제개선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**

□ 특례**남용** 행위 및 특례**사칭** 행위 등에 대한 **사후제재 규정** 마련

- **(특례남용)** 단순 고객모집 수준을 넘어서 민·형사상 불법·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특례제품 등 강매행위를 '권한남용'으로 규정·제재*

* ①사업개시 전 **준비행위기간 동안 고객모집 및 영업행위 금지**, ②**시정명령 및 규제 특례 취소** 근거규정 신설, ③**관리·감독기관의 고발권** 명시 등

- **(불법행위)** 규제특례 승인 없이 유사사업을 불법으로 영위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·벌금·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 도입

- **(사업지연)** 특례승인 이후 진입장벽 구축의도 등으로 의도적 사업개시 지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내(승인후 1년) 사업개시의무 도입*

*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기업의 소명 절차를 거쳐 특례심의위원회에서 **시정명령 또는 규제특례 취소 결정** 가능

□ 안전성 검증에 실패한 실증제품을 회수하는 **규제샌드박스 리콜제** 도입

- 안전성 검증 실패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실증제품 회수 → 자발적 회수 권고 후 미이행시 수거 명령

* 특례 심사시 **안전성 검증규모**와 안전성 검증실패에 따른 **판매제품 회수가능성 사전고지**

◇ 규제샌드박스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

□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, 신속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을 위한 「**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특례에 대한 특별법**」 제정 검토

* 기존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관, 「민군협력형 규제 샌드박스」 실증 사업을 위한 품목구매 시 수의계약 조항 신설 및 규제특례 법령정비 사항 일괄규정

○ (목적)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획기적 제도 개선과 개정수요가 있는 규제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담보하기 위한 新규제정비시스템 구현

○ (샌드박스 고도화) 신청·접수, 심사, 실증 등 단계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획형 샌드박스 도입, 특례기간 다양화 등 신규·보완사항 규정

기존 제도(산업융합법)	제도개선 및 신규도입 사항 ⇒ 특별법에 근거규정 마련
	<보강·개선> <신규도입>
① Bottom up 신청 → 개별 기업 규제 애로 ② 규제특례 대상 → 중앙부처 소관 법령 ③ 특례기간(2+2년) ④ 패스트 트랙 → 전문위 생략 평균 100일	① Bottom up 프로젝트 보강 → 혁신성 심사 및 컨설팅 강화 ② 특례 심의위 및 전문위 개편 → 전문성 및 부가조건 검증 강화 ③ 특례기간 다양화(단기, 중장기) → 기술 성숙도, 규제특성별 기간 상이 ④ 패스트 트랙 심의기간 단축 → 전문위 심의로 종결, 45일 소요
	① 기획형 샌드박스 신설 → 복합·덩어리 규제 발굴·기획 ② 지자체 조례 특례제도 도입 ③ 심의기한 설정(90일 이내)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④ 규제부처의 안전성 검증 및 법령정비 계획 의무화 ⑤ 특례남용 등 사후제재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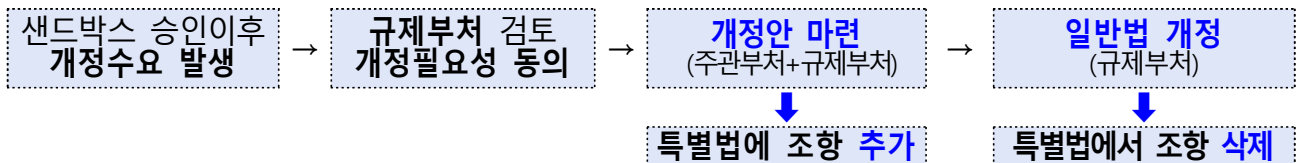
○ (법령정비 특별조치) 규제샌드박스 소관법령의 일괄적·전면적 정비절차 및 특별법상 특례 대상법령 등 관련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

• 규제법령이 신산업 분야별·부처별·규제양태별 매우 다기 → 특례 종료 이후 일괄적인 법령정비 요원 → 승인기업*은 특별법 등 획기적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 희망

* 승인기업 설문조사(22.11) : 법령정비 지연 우려(66%), 특별법 등을 통한 규제법령 신속정비 필요성(83%)

① (정비절차) 규제부처가 개정에 동의할 경우 개정안을 마련하여 특별법에 특례조항 추가 → 향후 규제법령 개정시 특별법 조항 삭제, 미개정시 조항 유지

< 특별법 운영절차(안) >



② (대상법령) 실증을 통한 ①안전성 검증 등 주요 쟁점이 해결되어 ②규제부처가 개정 필요성을 동의하는 규제법령으로 대상 한정

⇒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에너지·자원 분야부터 일괄 규제정비 규정을 우선 신설한 후 개정수요가 있는 타분야로 점진적 확대 추진

◇ 맞춤형 규제특례기간 부여 및 이용자 친화적 심의절차 개선

□ 기술 성숙도, 규제특성, 갈등가능성 등을 반영한 **규제특례기간 다양화**

- **(특례기간 다양화)** 기존 2년으로 일률적인 특례기간을 일반과제는 **2년**, 단기 실증과제는 **3개월~1년**, 대형 리스크 과제는 **3~5년**으로 기본 특례기간 다양화

① 일반과제 (2년)	• 특별한 쟁점이 없고, 기술 성숙도가 확보된 일반적인 과제 * (예) 맞춤형 건기식, 자율주행로봇,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
② 단기실증과제 (3개월~1년)	• ICT 등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 단기실증 및 조기 규제정비 필요과제 * (예)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등
③ 대형 리스크 과제 (3~5년)	• 대규모 설비투자 수반 및 파괴적 혁신 분야 해당 과제 * (예) 우주·항공·방산, 수소경제, 에너지신산업, 유전체 분석 등

- **(특례기간 연장)** 안전성 검증결과, 법령정비 착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기간 연장 및 임시허가(기간제한 없음) 전환 추진

① 특례기간 연장	• 일반과제, 단기실증과제, 대형 리스크 과제 모두 특례위 보고 또는 심의를 거쳐 기본 특례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허용
② 안전성 검증	• 안전성 검증 실패 → 실증특례 종료 • 안전성 검증 성공 → 법령개정 착수 및 임시허가로 전환

□ 신청기업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**심의절차 개선** 추진

- **(심의기간 제한)** 과제접수 후 **90일 내에 심의를 완료***(법정기한)하도록 하되,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제부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 연장

* 예외: ①신청업체 자료준비 부실 ②갈등 조정 선행 필요 ③특례위에서 '특별한 사정'으로 인정한 경우

* 심의기간 제한에 따른 국조실 지침을 반영하여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(23.상)

- **(입증책임 전환)** ①특례 반대사유, ②안전성 위해근거, ③부가조건 필요성 등을 규제 부처가 입증하도록 특례심의시 **입증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**(기업→규제부처)

- **(재심의 기회)** 전문위 및 특례위 부결 과제에 대해 신청기업에 재심의 기회(1회) 부여 (단, 규제부처 불수용 입장에 대해 신청기업이 반대 입증책임 부담)

* 재심의에서도 부결될 경우 특례위 의결을 통해 과제 검토 종료

◇ 전문성 · 대표성 제고를 위한 특례위 · 전문위 구성 개편

□ 산업융합 규제특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체계 및 구성 개편

- (특례위 개편) 특례분야 확대경향에 맞추어 특례위 정부위원 추가* 및 전문기관 민간위원 선임 등 심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강화

* (예) (국방부) 민·군협력 규제샌드박스, (관세청) 공항 수하물 관리, (식약처) 융합형 건기식 등

- (전문위 개편) 민간 공동위원장* 체제로 개편하여 ①패스트트랙 심의, ②갈등과제 1차 토의, ③기획과제 심의 등 수행

*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일반적 심의가 가능한 규제행정 분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선임

- 산업융합촉진법상 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위원회로 흡수 · 통합하여 상시적 갈등조정 메커니즘으로 활용

- (직제규정 개정)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효과적 과제심의를 위한 직무대리 및 부위원장* 등 규정 신설

* 산업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(당연직 정부위원)으로 추가 →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 신설

□ 여타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개선 거버넌스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

① 프로젝트형 샌드박스	→	• ICT융합 및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과 패스트트랙 과제 연동, 실증데이터 공유 등 협력 추진
② 특구형 샌드박스	→	• 규제자유특구 및 R&D 특구의 특례사업을 완료한 과제는 지역제한 없이 실증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 추진
③ 규제개혁 위원회 등	→	• 규제샌드박스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복합 갈등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, 규제심판부 등으로 이관하여 처리

◇ 「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종합포털」 구축을 통해 정보공개 강화 및 편의성 제고

□ 과제심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

-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, 절차별 일정, 조건 협의 등 진행현황을 제공하여 예측가능성 및 기업편의 제고

□ 원스톱 사후지원을 통해 인센티브 메뉴판, 법령정비 현황까지 적기 제공

- 과제 · 사업 단계별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맞춤형 추천하여 성과제고 지원
- 규제법령 정비현황을 공개하여 승인기업 및 후속기업의 사업스케줄 수립 지원

V. 향후 추진일정

- 승인기업 전용 R&D, 펀드 등 **사업화** 지원사업 **기획 및 예산 확보** 추진
 - 기업 수요조사, 과제 기획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**재원 확보방안** 검토(~'23.상반기)
 - 다만, '23년도에는 기존 예산사업 중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예산사업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추진
-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등 **신규 프로젝트** 추진을 위한 **기획기구 구성**
 - 민관 신산업 라운드테이블, 기술이전협의체, 민관합동 샌드박스컨설팅 지원단 등 신규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(~'23.1분기)
- 제도 개선에 따른 **특례위 · 전문위 개편** 및 **직제 변경** 추진
 - 특례위 위원 임기만료 및 산촉법 개정시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위원 추천 · 선임 절차 추진(~'23.상반기)
- 제도개선 및 개정 지연법령 일괄처리를 위한 **융합규제특별법** 제정 검토
 -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세부 제도개선 사항 및 제정안 도출